2018. 5. 24. 공지

# 한국세무사회
# 세무정보 안내

## 01. 공동사업자의 지역건강보험료 필요경비 인정 관련 변경 예규

①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산 시 공동사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1호의2 및 제11호의3에 따라 공동사업자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43, 2017.09.18)

## 02.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유의사항

① 거주자가 부동산을 취득하여 일부 층은 도·소매업의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층은 부동산임대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로서 층별·호수별 취득가액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해당 사업장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해당 사용면적비율로 안분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서면법규-505, 2013.05.02.)

② 부동산매매업자가 법원경매를 통하여 취득한 주택의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사비용, 보관비용은 「소득세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매매업자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소득-721, 2012.09.27.)

③ 직전 과세기간까지 계속하여 비과세되는 사업소득만 발생한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최초로 과세대상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의 신규사업자로 보아 단순경비율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임(서면법령해석소득2017-735, 2017.06.30.)

④ 성실신고확인대상인지 판단의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은 소득세법상 수입금액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일반적인 수입금액 뿐만 아니라 간주임대료, 판매장려금, 신용카드세액공제액, 사업양수도시 재고자산의 시가 상당액을 포함하는 것이며,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간주임대료, 고정자산매각액 등은 포함하지 아니함(한국세무사회 발간책,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요령 271페이지 참조)

⑤ 공동사업에서 단독사업으로 변경한 경우 성실신고확인 방법

- 공동사업을 운영하다가 단독사업으로 변경한 경우 공동사업장은 변경일 전날에 폐업한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폐업시 재고자산의 시가 상당액을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확인대상 여부를 판단하고 단독사업장은 공동사업장과 별개로 해당 사업장 수입금액에 의해 대상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한국세무사회 발간책,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요령 272페이지 참조)

◈ 감 수 : 손 창 용 세무사

※ 세무정보 안내는 실무 시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라며, 과세관청과 해석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어플(App) '다큐토리' 또는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웹, 모바일)에서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 어플(App) : 다큐토리 검색(http://www.docutory.kr/)
- 홈페이지(웹, 모바일) : 한국세무사회 → 세무사전용 → 회원공지(http://www.kacpta.or.kr)
- 문의처 : 한국세무사회 조세정보팀(02-597-2941)